

# 예산총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2,261,278	9,367,838
일반회계	268,499,004	8,054,970
특별회계	43,762,274	1,312,868
공기업특별회계	12,466,330	373,9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466,330	373,990
기타특별회계	31,295,944	938,878
주택사업특별회계	9,000	270
의료보호특별회계	635,460	19,064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042,000	31,260
장학사업특별회계	8,420,704	252,62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50,240	19,507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69,994	32,100
수질개선특별회계	19,268,546	578,05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 당 없 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39,716천원으로 한다. 예비비는 재난상황시 재난지원금에 우선 사용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